

2022. 04.

2022년도 단체협약 보충협약서



대 전 도 시 공 사
대 전 도 시 공 사 노 동 조 합

2022년도 단체협약 보충협약서

1. 연차유급휴가 의무사용에 관한 건

가. 단체협약 제49조(휴가 등) 제2항 개정

- 연차유급휴가 의무사용 : 개인별 연차휴가 부여일수에서 50%는 의무 사용 한다. <삭제>

2. 적용시기 및 방법

가. 적용시기 : 본 협약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

나. 적용방법 : 당초 개인별 연차휴가 부여일수(50%)를 2022년도 75% , 2023년 90%, 2024년 100% 사용으로 점진적으로 연차 휴가 확대사용



2022. 4. 13.

대전도시공사

대표교섭위원장
사장 김재혁



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

대표교섭위원장
위원장 조성

